

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86호의3서식] <신설 2023. 6. 9.>
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
재심의 청구기관	기관명 (부서)		
	담당자	전화번호	
	주소		
	전자우편 (e-mail)		
재심의 청구 제목			
재심의 청구 취지 및 이유			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의3에 따라
위와 같이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재심의 청구기관의 장

직인

시·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붙임 서류	재심의 청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